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4. 23 선고 2020가단59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2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. 1. 1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0. 1. 15. 접수 제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 근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노승욱

별지